예 산 총 칙

2021년도 간주예산 1차

제 1 조 2021년도 세입·세출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	회	계	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계				986,883,545	29,606,506
일	반	회	계	967,021,545	29,010,646
일	반	회	계	967,021,545	29,010,646
특	별	호	계	19,862,000	595,860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			1,404,000	42,120
지하수관리특별회계				197,000	5,910
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 특별회계				4,045,000	121,350
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				35,000	1,050
주차장특별회계				14,181,000	425,430

- 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예산 사업명세서"와 같다.
-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7,478,761천원으로 한다. (일반예비비 3,047,220천원, 목적예비비 24,431,541천원)
- 제 4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다.
- 제 5 조 금회 추경 후 국가 및 시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,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예산승인(명시이월 포함)된 것으로 간주처리할수 있고, 간주처리한 예산은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.